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4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서영교·오영환·이동주

양정숙 • 박상혁 • 권영세

김민철 · 오영훈 · 주철현

홍성국 · 임오경 · 박홍근

이형석 • 이해식 • 이병훈

한병도 • 김춘식 • 김상희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어,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 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
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,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.

이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런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 2항제4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	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	2
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	
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	
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	
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	
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	
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	
수 있다.	<b>.</b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	4.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
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. <단서	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. <u>다만,</u>
<u>신설&gt;</u>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
	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
	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
	제외한다.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